

◆ 질의와 회신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1. 감정수수료의 세입세출예산 반영 여부

【질 의】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환자에 대한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신감정수수료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감정을 행한 시립병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공사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대가지급 방법

【질 의】

D군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A회사는 준공완료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B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경우 B사는 D군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자는 대가지급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질 의】

○○광역시에서 발주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지급조건을 집단체비지로 대물변제한다고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명시하였는바, 공사계약 이행중 공사비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물변제 방식은 집단체비지를 여러개의 작은 체비지로 변경가능한지

회 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문서상에 집단체비지 대물변제를 작은 여러 개의 체비지로 공사대가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특수조건이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시 공사대가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이 없으면 집단체비지 대물변제의 공사대가 지급방법인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사료됨.

4. 기상대가 과다지급분 정산시 이자포함 여부

【질 의】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후 시공완료한 현장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과다지급정산에 따른 환수조치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이자부과가 가능하다면 각 차수별로 기성 지급된 시점부터 환수금액에 이자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총차분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 신

현행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가 과다지급에 따른 이자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이자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거나 기타 이자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지원업무 수행자의 입회없이 준공대가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의 준공급 지급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지침(건교부 고시)에 발주청은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직원(지원업무수행자)을 입회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 없이 준공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전면책임감리는 감리업체가 준공검사의 계획·완료·결과보고 등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며, 준공검사시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토록 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은 감리업체의 감리수행 적정성 여부를 기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규정으로 준공급 지급과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과는 별개의 사항인 바,

질의사항과 같이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이 없어도 책임감리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로 준공급 지급이 가능할 것임.

6.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질 의】

공사준공후 계약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계약상대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하는 바,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임.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질 의】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관련 법령등에 따라 우선지급여부가 판단될 것임.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가청구 가능 여부

【질 의】

하도급 직불합의서에 대가지급은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분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각각 계좌입금토록 되어 있는 바

① 원도급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대출상환이 우선이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직불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② 원도급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가 직접 발주처에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질의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라면

발주관서의 장은 원수급자의 대출금 상환과 관계없이 하도급자의 시공분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이 가능할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 수급업자와 협의하여 대가지급 청구를 해야 할 것임.

9. 하도급대금 직불이 곤란한 경우의 대가지급 방법

【질 의】

①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사준공후 준공금지급 신청시 하도급 직불동의로 하도급업체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현재 채권 가압류중인바 원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의 직불대상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준공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압류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대금청구는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하되 발주기관에서 대가지급은 압류된 금액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동 예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② 압류된 부분의 금액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별도계좌(세입세출외 현금)로 지출할 수 없음.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질 의】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를 '94. 10. 13 (주)○○외 2개사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의 주공정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나머지 공정까지 7년으로 한 경우 타당성 여부

회 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경우 공종별로 구분된 〈별표 1〉, 〈별표 4〉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복합공사로서 공종간의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공종간의 하자구분이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급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담보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임.

11. 공종간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질 의】

도시철도 건설공사 최초계약 체결시 공종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총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총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대로 10년으로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12.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질 의】

조경식재공사에 있어 준공후 수목이 고사되는 사항이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제2항에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2조제4항에 조경식재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제34조(특례설정등)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발주처에서 동예규를 적용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어 특례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를 둘 수도 있을 것이며
- 계약이행후에도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방법

【질 의】

하자보수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 처리방안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14. 해산된 회사의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가능 여부

【질 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한 하자보수 보증금에 있어 하자보증금을 납부한 회사가 해산 간주등기되어 대표이사 등 임원이 말소등기된 바 말소등기전 대표이사가 하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여부

회 신

- 하자보증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는 경비에 해당되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금의 반환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당시에 채권자인 A법인이 파산말소등기 되었다면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5. 계약상대자의 부도등 발생시 지체상금 부과방법

【질 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계약완료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자체감사시 지체일수 계산착오 적발에 따라 2차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2차 지체상금 부과후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변상여부, 채권소멸 여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회 신

- 지체상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부과하는 지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1, 2차)을 부과하였고, 당해 계약목적물이 이미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발주관서에서 공사목적물을 인수, 인계를 하여 당해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지체상금을 부과시 “지체일수” 적용을 잘못 계산하여 미부과한 잔여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고의가 아닌 부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징수하면 될 것임.
-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사실판단에 따라야 함.

16.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질 의】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차수별 계약금액과 총공사금액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기성금액을 수령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체일수 산정시 준공계 접수일자와 준공검사완료일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함.

계약만료일 이후에 준공검사 신청시 지체일수 산정기준은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준공처리일까지 산정함.

17.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 의】

2000. 7. 1 계약하여 2000. 9. 18 납품기한인 물품구매 입찰에 있어 2000. 10. 18일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 지연납품되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물품에 대한 성능비교 등 검수기간이 소요되어 2001. 1.31 납품완료되었다면 지체상금부과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요한 검수기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의 합격 여부 및 보완지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하는 것임.

18. 연관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질 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축공사A사와 소방공사B사가 11억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2001. 1. 30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공사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인 2001. 1. 31까지 준공이 불가하여 B사는 A사를 귀책사유(지체상금부과)로 하여 공사연기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2001. 2. 20일까지 계약기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공동수급사인 A,B사는 2001. 2. 16일 준공검사를 제출하여 2001. 2. 21일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금액 또는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여부

회 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인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이 지연되어 차순위공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차순위 공종을 수행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하며, 지체상금은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을 지체한 구성원에 대하여 동 공종의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임.

19.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질 의】

2001. 4. 1 ~ 2001. 12. 31까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중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허위·위조서류로 판명됨에 따라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중에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계약기간중 2001. 10. 31까지 7개월간은 계약이행완료로 기성금이 지급되었는바 나머지 2개월간의 계약 미이행분만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것임.

20. 공사해지시 잔여공사의 집행방법

【질 의】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부 회계예규) 제46조제1항제2호“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입찰 가능여부

회 신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공사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새로운 입찰로 시행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계약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여공사 금액,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2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질 의】

○○군 발주공사에서 S건설업체는 공사계약이행 중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각종 악성채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공사포기 및 철회 등을 반복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와 성실을 위배하고 있음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중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바,

귀 군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각종 악성채무, 사업자등록 폐업, 공사포기 및 철회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임.

22. 계약상대자의 부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① 당초 수의계약으로 시공중이던 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코자 하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②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이행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가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며, 계약불이행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계약이행이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질의②에 대하여)
-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잔여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토대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하는 것임.